

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

1999. 5. 14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1999년 4월 29일 제출
- 회 부 : 1999년 4월 29일

3. 제안이유

-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과 권한위임으로 도지사의 사무가 시장군수의 사무가 되어 존치근거가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조례 폐지

5. 검토의견

- 조례제15조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등 주요권한을 현재 시군출장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, 동사항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 규정에 의거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 게 권한재위임한 사항으로 조례폐지가 바람직함